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1. 12 선고 2022나51831 판결 [보증채무금]

재판경과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1. 12 선고 2022나51831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2. 21 선고 2021가단210762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김도연

피고, 항소인 1. 주식회사 B(변경 전: 주식회사 C)

2. D 주식회사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민

변론종결 2022. 11. 24.

판결선고 2023. 1. 12.

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2. 21. 선고 2021가단210762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303,489,105원 및 그 중 267,741,2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은
2022. 11. 24. 원고의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.

2. 소송종료 이후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,489,105원 및 그 중 267,741,270원에 대하여 2020. 10. 31.부터 2020. 12. 7.까지는 연 7.94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294,52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(원고는 제1심에서 위 청구와 별도로, ‘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263,727,539원 및 그 중 232,663,200원에 대하여 2020. 10. 31.부터 2020. 12. 7.까지는 연 7.94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255,93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, ② 152,852,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9. 29.부터 2021. 11. 16.까지는 연 7.94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, 피고 D 주식회사는 245,960,000원, 피고 주식회사 B는 129,172,751원의 각 한도내에서 지급하라.’는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, 피고들이 위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청구 부분은 원고 승소판결로 분리·확정되었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아래에 해당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,489,105원 및 그 중 267,741,270원에 대하여 2020. 10. 31.부터 2020. 12. 7.까지는 연 7.94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294,52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기록에 의하면,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.

가.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은 상대로 '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263,727,539원 및 그 중 232,663,200원에 대하여 2020. 10. 31.부터 2020. 12. 7.까지는 연 7.94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255,93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(이하 '①항 청구'라고 한다), ② 152,852,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9. 29.부터 2021. 11. 16.까지는 연 7.94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, 피고 D 주식회사는 245,960,000원, 피고 주식회사 B는 129,172,751원의 각 한도내에서 지급하고(이하 '②항 청구'라고 한다), ③ 303,489,105원 및 그 중 267,741,270원에 대하여 2020. 10. 31.부터 2020. 12. 7.까지는 연 7.94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294,52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(이하 '③항 청구'라고 한다)'는 청구를 하였고,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청구들을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

나. 피고는 제1심판결 중 ③항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는데, 원고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22. 11. 23. ③항의 청구를 취하하는 의미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부분이 같은 날 피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.

다.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2022. 11. 24.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③항 청구를 취하하는 의미의 청구취지 변경에 동의하였다.

2. 소송종료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이 원고의 ①, ②, ③항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판결 중 ③항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③항 청구 부분에 한정되었는데, 이후 원고가 2022. 11. 23. ③항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,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2022. 11. 24. 원고의 ③항 청구 부분의 소 취하에 동의함으로써 같은 날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법원의 유일한 심판대상인 ③항 청구에 관한 소는 2022. 11. 24. 소 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,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유석동, 판사 김현주, 판사 임효빈